

# 청약안내 [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]



## 청약 신청자격 확인

구분	내용
공통사항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(인천, 서울, 경기)에 거주(장기복무군인제외)중 이신가요? -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- 과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청약 제한이 있으신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	- 각 유형별 추천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으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되었나요? - 당첨자(예비대상자 포함)로 선정된 분만 청약이 가능하며,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무주택 세대 요건	-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해당되는 분
자산 및 소득 요건	- 해당 없음

## 추천대상자 및 입주자저축 구비 여부

추천대상자	해당기관	입주자저축 구비 여부
국가유공자 등	인천보훈지청 복지과	해당 없음 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고 6개월 경과 및 연체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한 자
장애인	장애인복지과(인천, 서울, 경기)	
철거민	인천시청 건축계획과	
장기복무 제대군인	인천보훈지청 복지과	
10년이상 복무군인	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	
의사상자 등	인천시 복지국 복지정책과	
북한이탈주민	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	
다문화가족 구성원	인천시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	
우수선수	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	
우수기능인	한국산업인력공단(인천지역본부) 국제기능경기부	
중소기업 근로자	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성장지원팀	
대한민국 체육유공자	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	

##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됩니다.</li> <li>• 당첨자에 대한 동·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·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. (미신청, 미계약 동·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 불가)</li> <li>•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(신혼부부, 생애최초, 다자녀가구, 노부모부양 포함)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기회가 제공되며,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0% 범위에서 '특별공급 예비입주자'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(인천광역시, 서울특별시, 경기도)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)에 거주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.</li> <li>•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.</li> <li>•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.</li> <li>•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,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.</li> <li>•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(2021.09.13)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(www.applyhome.co.kr)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[※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 배정) 및 계약 불가]</li> </ul>